

고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196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3. 7. 16 .
제 출 자 : 고 성 군 수

1. 개정이유

새마을 장학생 자격요건중 우등장학생의 학업성적 규정사항에 대하여 현행 정원의 비례석차로 하는 대신 중등학교에서 발급하고 있는 성적증명서의 평가방법(기준)으로 하여 현실성 있게 개정함으로써 장학생 선발에 적정성을 기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우등장학생 학업성적 규정사항 개정 (안 제3조제1항제2호)
- 나. 우등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의 장학금 지급정지에 대해 학업성적 규정사항의 개정 (안 제9조제1항제3호)

3. 참고사항

4. 본 문 : 붙임

고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고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2호중 “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”를 “전 교과목 총점에 대한 평균점수가 100분의 60이상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과목별 성취도 평균평정점이 5분의 3이상인 자(‘수’는 5점, ‘우’는 4점, ‘미’는 3점, ‘양’은 2점, ‘가’는 1점으로 환산, 과목별 단위수를 곱한 평균점수가 3점이상인 자)”로 한다

제9조제1항제3호중 “학업성적이 80/100이하로”를 “전 교과목 총점에 대한 평균점수가 100분의 60미만 또는 과목별 성취도 평균평정점이 5분의 3미만으로”로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장학생의 자격) ①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우등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<u>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</u> 해당하는 자</p> <p>3. (생략)</p> <p>제9조(지급의 정지) ①(생략)</p> <p>1.~2. (생략)</p> <p>3.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, <u>학업성적이 80/100이하로 떨어지거나</u> 특기자로서 자격을 상실할 때</p> <p>4.~5. (생략)</p>	<p>제3조(장학생의 자격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<u>전 교과목 총점에 대한 평균점수가 100분의 60 이상에</u> 해당하는 자 또는 <u>과목별 성취도 평균평정점이 5분의 3이상인 자('수'는 5점, '우'는 4점, '미'는 3점, '양'은 2점, '가'는 1점으로 환산, 과목별 단위수를 곱한 평균점수가 3점이상인 자)</u>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(지급의 정지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1.~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, <u>전 교과목 총점에 대한 평균점수가 100분의 60미만 또는 과목별 성취도 평균평정점이 5분의 3미만으로 떨어지거나, 특기자로서 자격을 상실할 때</u></p> <p>4.~5. (현행과 같음)</p>